
V.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1. 그룹단위 감독체계 수립

가. 경제적 실체로서의 보험지주회사

-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 감독은 개별회사에 대한 감독에 치우쳐 그룹단위감독에 대한 틀이 미비한 상태임.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이 주로 대형 은행지주회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은행 자회사가 이들 은행지주회사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함.
 -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도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의 틀에서 이루어지나 그룹단위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AIS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적 실체인 금융그룹에 대해 그룹단위감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제고되는 있는 시점임.
 - 또한 EU의 Solvency II 등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룹단위감독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음.

나. 그룹단위 감독체계의 도입

-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험지주회사 등의 감독에서 보험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그룹단위 감독체계를 도입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임.

- 금융정책 및 감독당국의 그룹단위감독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고 있으며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그룹단위 감독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임.
- 비금융자회사 등 관련회사도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노출(risk exposure)이 있는 경우, 그룹단위 감독체계 안에 편입시켜 리스크의 전이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감독은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조직체계는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음.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하 금융정책과는 금융지주회사의 인가·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정책 수립과 금융그룹의 감독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또한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산하 금융지주회사감독팀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경영분석, 소유지배구조 및 업무위탁 등의 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 금융정책 입안자는 효과적인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그룹감독자들의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고, 감독당국은 보험지주회사의 그룹단위 감독자의 지명과 관련 감독자들 사이의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체계를 수립해야 함.

- 개별회사 단위 감독을 보완하는 그룹단위감독을 통해 자회사 감독자 간 협조와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개별회사단위 감독의 사각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지주회사의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그룹단위감독을 총괄하고, 각 개별회사 단위 감독자들과의 협력 및 정보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큼.
 - －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그룹감독자의 지명과 감독협의체 설립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소속 회사의 개별감독자들 사이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야 효과적인 그룹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재 국내 보험그룹의 형태가 아직 지주회사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 유럽이나 미국의 규제 및 보험그룹 감독체계를 한국의 보험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을 유도하여 그룹단위감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투명성⁶³⁾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그룹의 특성을 반영한 자본 평가

가.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그룹단위 자기자본 규제

■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규제는 금융업권별 자기자본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개별 금융회사 단위의 요구자본 산출방식을 그대로 사용함.

○ 은행지주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은 개별 은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8%의 BIS 자기자본비율 요구하고 있음.

－ 이는 은행지주회사 전체를 은행업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은행지주회사에서 타 금융권역 자회사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임.

○ 증권, 보험 등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자회사의 자기자본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개별 기업단위에서 산출된 요구자본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금융그룹의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있음.

63) 보험핵심원칙 23.5에서 요구하듯 그룹단위감독을 저해 않는 충분한 투명성을 갖도록 보험그룹 구조의 변화를 유도함.

-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에도 금융그룹 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비은행지주회사의 자본규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개별 감독 형태여서 이를 그룹단위감독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높음.

나. 연결기준에 의한 자기자본 산출

- 금융그룹의 요구자본은 그룹 전체가 가지는 리스크를 반영해야 하고, 가용자본의 경우에도 다중계상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그룹단위 연결기준 사용이 보다 현실에 가까운 자본산출방법으로 볼 수 있음.
- 금융그룹 관련 회사들이 내부거래를 통하여 금융그룹에 미치는 리스크 노출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결기준을 사용하여야 함.
- 특히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금융회사까지 연결하여 보험그룹을 하나로 보는 연결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다. 자본산출방식의 개선

1) 분산효과 고려

- 그룹단위에서 지급능력을 산출하는 가장 큰 이점은 개별회사 방식을 지급능력 산출이 파악하지 못하는 리스크의 분산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임.
- EU의 제5차 계량영향평가에서 보듯이 Solvency II의 그룹단위 지급능력 산출은 그룹 내 분산효과를 반영하여 요구자본의 양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효과는 대형 금융그룹의 경우 보다 두드러짐.

- 우리나라도 지급능력 평가 시 이와 같은 분산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요구자본 산출방식을 고려하여 보험지주회사의 자본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유럽의 예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면 분산효과를 고려한 요구자본 산출을 통하여 특히 대형사의 자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2) 자본의 질에 대한 고려

- 지급능력 평가를 위한 가용자본의 산출에 있어서도 대체성과 가용성을 고려한 자본의 질을 고려하여야 현실에 맞는 지급능력평가가 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도 자본의 손실보전능력을 평가하여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여야 위기 시의 실제로 가용한 자본을 통한 실질적인 지급능력이 발현될 수 있음.

3. 상시감독수단으로서의 ORSA 도입

- 보험회사의 전사적리스크관리(ERM)를 감독과 연결시키는 ORSA는 보험그룹에 대한 효과적 감독수단임.

- 보험그룹의 리스크관리는 그룹 경영진이 자체적인 리스크의 진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에게 감독 목적의 전사적리스크관리(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수행을 요구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ORSA 적용에 대해서는 모두 적극적임.

- 단, 표준모형을 대체하는 내부모형이 감독당국이 활용할 선제적인 위험관리의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미국 SMI와 EU Solvency II가 상이한 태도를 보임.

■ ORSA는 보험회사가 미래지향적으로 자사의 핵심 리스크를 파악하고 경영 유지에 필요한 적정 자본 수준을 판단하는 일련의 리스크관리에 대해서 감독 당국에 보고하는 체계⁶⁴⁾라고 할 수 있음.

- ORSA는 시나리오에 기초한 위기상황분석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험그룹이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임.
- 이는 새로운 모형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위험관리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며, 대형 회사들의 경우 이미 전사적 위험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최근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RBC제도가 표준모형에 의한 일률적 규제에서 개별 보험회사의 내부 위험관리모형을 인정하는 내부모형제도도 허용하는 변화와 일맥상통함.

■ 또한 오로지 보험그룹 관점에서 자사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현행 국내 RAAS⁶⁵⁾와 같은 정형화된 기준을 가지지도 않음.

- 다만, 비교가능성을 위해 일부 사전에 지정한 시나리오를 ORSA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64) 이런 의미에서 ORSA는 규제보다 상시감독에 가까움.

65)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 또는 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은 RBC의 연장선상에서 감독당국이 정한 항목에 대한 기준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보다는 규제에 가깝고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음.